

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조상호 의원 대표발의)

| | |
|----------|------|
| 의안 번호 | 1855 |
|----------|------|

발의년월일 : 2020년 8월 12일

발 의 자 : 조상호, 김생환, 이영실,

김경영, 권영희, 김경우,

최 선, 임만균, 송아량,

이은주, 이승미, 박기재,

전병주, 양민규 의원 (14명)

1. 제안이유

- 2020년 9월 개관 예정인 ‘스페이스 살림’ 업무를 출연기관인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대표의 직무로 명시하고자 함.
- 또한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개정(’20.6.4. 공포 시행)사항을 반영하여 결산 기한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에서 2개월 이내로 변경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재단 대표이사의 직무로 스페이스살림을 규정함 (안 제8조)

나. 재단의 결산서류 제출기한을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이내로 규정함 (안 제15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45조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 참조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재단 및 서울여성플라자를”을 “재단, 서울여성플라자 및 스페이스 살림을”로 한다.

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”을 “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|---|
| <p>제8조 (임원의 직무) ①대표이사 는 <u>재단 및 서울여성플라자</u>를 대표하며, 업무를 총괄한다.</p> <p>② (생 략)</p> <p>제15조 (사업계획서, 결산서 등의 제출) ①·② (생 략)</p> <p>③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산서류를 <u>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</u>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1.·2. (생 략)</p> | <p>제8조 (임원의 직무) ①----- -- <u>재단, 서울여성플라자 및 스 페이스 살림</u>을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5조 (사업계획서, 결산서 등의 제출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<u>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</u> --- -----.</p> <p>1.·2. (현행과 같음)</p> |